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323

제출연월일: 2008. 5. 7.

제 출 자: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원자력 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8. 3. 21. ~ 4. 10. / 접수의견 1건(반영 1건, 별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 1. 원자력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 관련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능 방재계획상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유성구의회의원
 -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 5. 원자력 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자
 - 6. 원자력 관련시설 인근 지역주민 대표
 - 7. 환경 또는 원자력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8. 그 밖에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방위비상대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계획

□ 관련 조례안

- 명 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08.3.21~4.10(20일간)
- 의견제출 : 1건(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 제출방법 : 전화('08.4.2)
 - □ 조례안 제3조(구성)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원자력 관련기관의 임원"의 용어가 적합한지 여부 재검토 요청

□ 의견 반영안

조 례 안	반 영 안	사 유
제3조(구성) ①~②생략	제3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유성구의회의원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유성구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5. 원자력 관련기관의 임원	5. 원자력 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자	※ 아래와 같음
6~8. 생략	6~8. 생략	

□ 반영사유

- 원자력관련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확인 결과 <u>"임원"이라함은 원장과 감사가 해당</u>되어 입법취지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 원자력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u>원자력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u> 자"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5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8일

3. 상 정 일 자: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 5. 28)상정, 심사,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김의수)

1. 제안이유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 (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다.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이환구)

○ 본 조례안은 관내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하여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임기, 회의 소집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수당지급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규정함.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재발방지와 원자력 관련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및 방사능 방재계획의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종전 훈령으로 운영하던 "대전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보다 제도적 효력이 강화된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 시민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제정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조례제정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중앙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실효성이 낮고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대대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언론에서 지적한 타 지역 위원회의 일부 잘못된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들의 중복 위촉으로 각종 수당 명목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와 업무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전문가라는 위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략하는 등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번 제정조례가 설치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 답변요지**: 생략

V. **토 론 요 지**:생 략

V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